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재건복구신탁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23. ~ 11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5	국제부흥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재건복구신탁기금에 출연	1천만 미합중국달러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	
연 락 처	(044) 215 - 8723